

체육지도자 배치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

체육시설업의 종류	규 모	배치인원
스키장업	○ 슬로프 10면 이하	1명 이상
	○ 슬로프 10면 초과	2명 이상
요트장업	○ 요트 20척 이하	1명 이상
	○ 요트 20척 초과	2명 이상
조정장업	○ 조정 20척 이하	1명 이상
	○ 조정 20척 초과	2명 이상
카누장업	○ 카누 20척 이하	1명 이상
	○ 카누 20척 초과	2명 이상
빙상장업	○ 빙판면적 1,500제곱미터 이상 3,000제곱미터 이하	1명 이상
	○ 빙판면적 3,000제곱미터 초과	2명 이상
승마장업	○ 말 20마리 이하	1명 이상
	○ 말 20마리 초과	2명 이상
수영장업	○ 수영장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	1명 이상
	○ 수영장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	2명 이상
체육도장업	○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	1명 이상
	○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	2명 이상
골프연습장업	○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	1명 이상
	○ 50타석 초과	2명 이상
체력단련장업	○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	1명 이상
	○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	2명 이상
체육교습업	○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	1명 이상
	○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	2명 이상
인공암벽장업	○ 실내 인공암벽장	1명 이상
	○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	1명 이상
	○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	2명 이상

비고

1.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2.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3.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.